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기준(제14조의2제2항 관련)

1. 전문인력 구성기준

구분	자격기준 등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는 의사로서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병성감정책임자 중 1명은 병성감정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두고, 상근(常勤)해야 한다.

2. 시설 기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병성감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	수량	비고
가. 병성감정 전용 실험실	1실	
나. 소각실 또는 소각로	1실 또는 1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다. 부검실	1실	병리해부, 조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로서 외부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별도 구분·구획된 전처리실[폐사체·장기 등 검사시료의 전처리실(前處理室)을 말한다]을 갖춘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실험기자재 구비기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병성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다음 기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가. 필수기자재

장비명	수량	비고
광학현미경 (Microscope)	1대	
천평 (Balance) 또는 전자저울	1대	
냉장고 (Refrigerator)	1대	

수소이온농도측정기(pH Meter)	1대	
원심분리기(Centrifuge)	1대	
고압멸균기(Autoclave)	1대	
배양기(Incubator)	1대	
항온수조(Floating bath)	1대	
조직처리기(Tissue processor)	1대	
조직포매기(Embedding center)	1대	
조직절편기(Microtome)	1대	
슬라이드건조기(Slide warmer)	1대	
염색बाट드 또는 자동조직염색기 (Automatic slide stainer)	1대	
부검도구	1세트	
부검대(Necropsy table)	1대	
혐기배양기(Anaerobic jar)	1개	
알콜램프 또는 가스램프	1대 이상	
세균배양용 백금이(루프)	3개 이상	
효소면역법판독기(ELISA reader)	1대	
중합연쇄반응기(PCR machine)	1대	

나. 권장기자재

장비명	수량	비고
형광현미경 (Fluorescent microscope)	1대	
CO2 배양기(CO2 incubator)	1대	
냉동조직절편기(Cryotome)	1대	
혈액검사기 (Automatic blood cell counter)	1대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	1대	
자동조직염색기(Automatic slide stainer)	1대	
도립현미경 (Inverted microscope)	1대	
자동혈청미량성분분석장치 (Automatic serum analyzer)	1대	
HPLC system	1대	

다. 필수 실험실 물품

물품명	수량	비고
에칠알콜(Ethanol)	검사업무를 원활히 실시	

	할 수 있는 적정 수량	
메칠알콜 (Methanol)	"	
크리스탈 바이올렛 (Crystal Violet)	"	
요오드 (Iodine)	"	
사프라닌 (Safranin)	"	
슬라이드글라스 (Slide glass)	"	
커버글라스 (Cover glass)	"	
파라핀 (Paraffin)	"	
자이렌 (Xylene)	"	
김사 (Giemsa)	"	
에오신 (Eosin)	"	
헤마톡시린 (Hematoxylin)	"	
포르말린 (Formalin)	"	
페트리디쉬 (Petri dish)	"	
혈액배지 (blood agar, 세균, 세포 등을 배양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에 혈액을 첨가하여 만든 액체나 고체)	"	
플러힌턴배지 (Muller hinton agar)	"	
맥콩키배지 (MacConkey agar) 등 세균분리동정용 배지수종	"	

비고

가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병리해부, 조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필요한 가목의 필수기자재, 다목의 필수 실험실 물품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